정보 공시 운영 위원회 규정

제정 2008. 03.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정보공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시제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공시항목별 신뢰도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3. 공시항목별 통계자료 검증에 관한 사항
4. 대학특성화 지표 등 대학 운영 현황자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평가관리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평가관리팀에서 관장한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교직원 및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청취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 및 관계부서에서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기획예산과-438, 2008. 04. 01)

이 규정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